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가단5560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양장열

변론 종결2019. 7. 11.

판결 선고2019.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0,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월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소재 C연구소 경량공사 중 천정공사와 벽체공사(칸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총 공사금액 71,5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원고에게 여러 현장의 경량공사를 여러 번 도급준 적이 있는데, 통상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여 적정 공사금액 등을 대략 정한 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 완료 후 추가물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산하여 총 공사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구두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현장소장은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적정 공사금액을 대략 62,92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척이 더디어지고, 원고로부터 공사 진행에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원고에게 '현장 인부를 최대한 동원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장과 적정인건비를 산정하여 지급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현장 진행을 위하여 40,000,000원의 결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4. 35,000,000원, 2016. 11. 11.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각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철자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노무자에게 합계 51,194,000원을 지급하였다.

1	D	2016. 11. 7. ~ 2017. 1. 7.	5,930,000원
2	E	2017. 1. 26. ~ 2017. 3. 30.	4,770,000원
3	F	2016. 9. 13.	800,000원
4	G	2016. 12. 10. ~ 2017. 1월경	12,358,000원

1	D	2016. 11. 7. ~ 2017. 1. 7.	5,930,000원
5	H	2016. 10. 5. 및 2016. 12. 31.	3,600,000원
6	I	2017. 4. 18.	7,736,000원
7	J	2016. 11. 7. 및 2016. 11. 14.	16,000,000원
합계	51,194,000원		

사. 원고는 2016.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자재비 17,186,423원, 노무비 95,603,929원, 회사 이윤 7,895,325원 총 120,685,677원으로 하는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노무자인 K과 L이 2016. 12.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하자, 피고는 2017. 1. 25.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직영노무비 명목으로 K에게 8,689,948원, L에게 8,689,350원(각 위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9,360,000원이다)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가 직접 구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인 M 등에게도 합계 26,3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금액]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구두로 체결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 착공 이전에 명확한 공사대금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공사대금이 아닌 '철자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K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직영노무비 명목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처리하는 형식으로 하되,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자재비와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제1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로 17,186,423원, 인건비로 51,194,000원을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자재비 명목 등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내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노무비 상당의 구상금으로 18,380,423원(= 17,186,423원 + 51,194,000원 -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인건비 지출일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총 공사금액은 자재비 17,186,423원, 노무비 95,603,929원 합계 120,685,677원이고, 이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50,000,000원과 K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18,720,000원 합계 68,72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51,965,67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비 청구금액 51,194,000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노무비가 앞서 인정한 51,194,000원을 초과하여 95,603,929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견적서보다 감액하여 62,92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지출한 총 공사비도 자재비 17,186,423원과 노무비 51,194,000원을 합한 68,380,423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 원고가 고용한 K와 L에게 노무비로 합계 18,72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노무비도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62,92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노무자로 일한 K와 L에게 그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K와 L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에서 공제할 금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광섭